

마포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6. 9. 8.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6. 8. 21. 마포구청장(복지정책과)

나. 회부일자 : 2026. 8. 24.

다. 상정일자 :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(2026. 9. 8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마포구청장(복지정책과)

3. 제출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, 마포복지재단의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무상사용의 필요성

- 1) 사회복지 정책환경 변화와 지역문제에 선제적 대응,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의 적극적 추진 필요
- 2)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으로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마포복지재단의 사무실 무상사용 필요

나. 무상사용 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무상사용 면적
염리종합사회복지관	서울시 마포구 대흥로24길50(염리동)1층	172.04㎡ (1층 일부)

다. 최초허가일 : 2021. 11. 1

라. 사용기간 : 마포복지재단

마. 사용용도 : 재단 사무공간(사무실, 임원실, 교육실, 기탁
물품 보관실 등)

바. 사용기간 : 2026. 11. 1. 사무실 이전 시까지

사. 사 용 료 : 면제 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)

5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(사용료 감면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
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

6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,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
따라,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
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마포복지재단의 사업에 필

요한 사무실, 임원실, 교육실, 기타물품 보관실 등 재단 사무공간
으로 우리 구 행정재산 염리종합사회복지관 1층 일부(172.04㎡)를
무상으로 사용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관련규정과 상충됨이 없고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참 고 자 료

1. 관련법규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⑤ 법24조제1항제4호에서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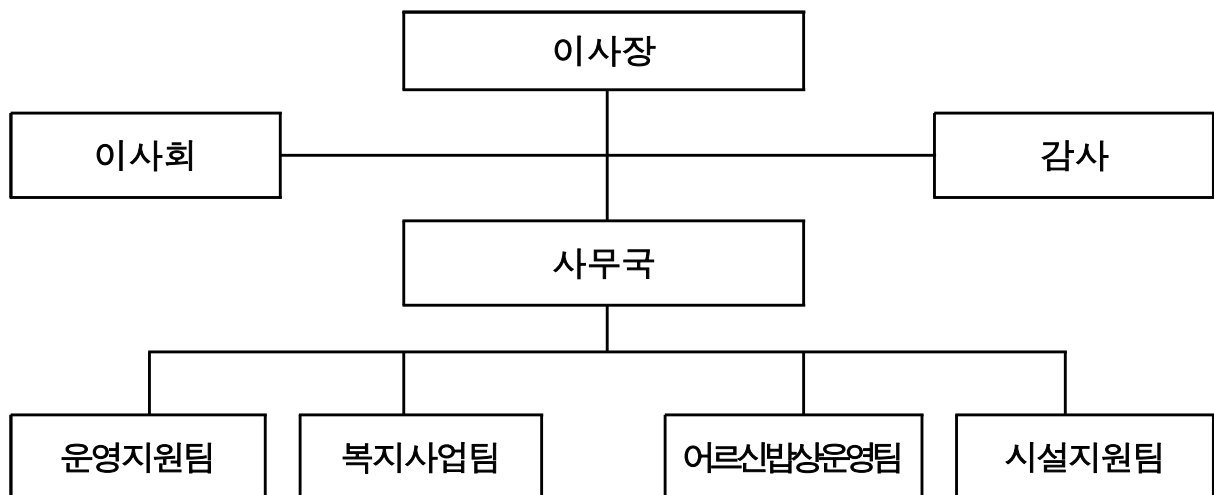
제8조(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)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

2. 마포복지재단 일반 현황 [2026. 1. 현재]

□ 설립 개요

- 설립근거 : 민법 제32조/공익법인법/지방출자출연법
서울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설립형태 : 마포구출연기관, 비영리 재단법인, 공익법인
- 설립허가 : 2021. 11. 2.(대표자: 김은영)
- 기본재산 출연: 50억원
 - 보통재산 :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(매년 별도 출연)
- 조직·인력 : 이사회(이사17명, 당연직포함), 감사(2명), 사무국 및 반찬공장(29명)
 - 현 재직 이사 임기 2027. 11. 1. 까지 / 임기 2년(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나, 이사장은 단임제)
- 주요사업 : 어르신밥상 사업,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, 네트워크 구축, 복지시설 운영 등

□ 기 구 ----- 10이사회, 1국, 4개팀



□ 인 력 ----- (정원:13명, 현원:31명)

구 분	계	이사장	국장 (2급)	팀장 (3급)	대리(4급), 주임(5급)	정원외 인력
정 원	13	1	1	4	7	-
현 원	31	1	1	4	7	18

※ 정원외 인력(16명): 어르신밥상 반찬공장(16명 / 영양사 및 조리, 배송인력)
계약직(2명 / 사회복지사, 어르신밥상 전담인력)

□ 예산 현황 (2026년)

(단위 : 천원)

합계	보통재산	후원금	기타(이자 등)
7,283,330	1,843,183	2,595,207	2,480,940

□ 기타 현황

- 위원회 : 2개 운영(인사위원회, 나눔네트워크 지역위원회)

□ 수탁시설 현황 : 20개 시설

(2026.1.16.기준)

연번	시설명	직원수	소재지	수탁기간
1	마포행복나눔푸드(뱅크)마켓 1호점	3명	성산2동	2022. 4. 1. ~ 2027. 3. 31.(5년)
2	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	47명	성산1동	2023. 5. 1. ~ 2028. 4. 30.(5년)
3	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	5명	성산1동	2023. 5. 1. ~ 2028. 4. 30.(5년)
4	누구나동행하우스	3명	공덕동	2023. 3. 10. ~ 2028. 3. 9.(5년)
5	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	2명	대흥동	2023. 9. 1. ~ 2028. 8. 31.(5년)
6	마포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	10명	아현동	2023. 9. 1. ~ 2028. 8. 31.(5년)
7	마포구가족센터	26명	합정동	2024. 1. 1. ~ 2028. 12. 31.(5년)
8	초록숲데이케어센터	12명	아현동	2024. 4. 1. ~ 2029. 3. 30.(5년)
9	창전동효도숙식경로당	1명	창전동	2024. 4. 8. ~ 2027. 4. 7.(3년)
10	공덕실뿌리복지센터	5명	공덕동	2024. 4. 4. ~ 2027. 4. 3.(3년)
11	창전데이케어센터	12명	창전동	2024. 6. 1. ~ 2029. 5. 31.(5년)
12	성산누리어린이집	15명	성산동	2024. 7. 27. ~ 2029. 7. 26.(5년)
13	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	8명	상암동	2024. 9. 1. ~ 2029. 8. 31.(5년)
14	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	17명	성산동	2024. 11. 1. ~ 2029. 10. 31.(5년)
15	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 (병설 마포데이케어센터)	45명	서강동	2024. 11. 8. ~ 2029. 11. 7.(5년)
16	용강어린이집	13명	용강동	2025. 1. 1. ~ 2029. 12. 31.(5년)
17	연남어린이집	10명	연남동	2025. 5. 1. ~ 2030. 4. 30.(5년)
18	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	17명	상암동	2025. 9. 1. ~ 2028. 8. 31.(3년)
19	서울형 키즈카페 마포구 쌍룡산근린공원점	17명	염리동	2026. 1. 26. ~ 2031. 1. 25.(5년)
20	마포구3호점 우리동네기움센터	3명	용강동	2025. 12. 1. ~ 2030. 11. 30.(5년)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8. 토론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10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1. 기타 : 없음